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0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옥재은,
유정희, 이봉준,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를 찾아 분야별 직업들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때 당사자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학부모, 동행하는 교직원 등까지 감상 및 평가와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무적인 장치를 필요로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의견수렴)를 신설하여 교육감은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14조 (생 략)</u>	<u>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u>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안 제14조(의견수렴)에 규정한 것으로 의견수렴 방식¹⁾에 따라 비용 발생여부가 달라져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²⁾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 1)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① 가정통신문 활용, ② 온라인 및 유선 설문조사 실시, ③ 공청회 및 토론회 실시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임
 - 2) 기존에도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 가정통신문 회신 형태(별도 비용발생 없음)로 실시한 사례가 많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교직원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안 제14조(의견수렴)은 교육감의 노력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